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0가단105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변 론 종 결 2022. 4. 26.

판 결 선 고 2022. 5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은 1122/2142 지분에 대하여, 피고 C, 피고 D, 피고 E은 각 34/2142 지분에 대하여, 피고 F, 피고 G, 피고 H, 피고 I, 피고 J, 피고 K는 각 153/2142

지분에 대하여, 각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5. 9. 20. 접수 제41007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F, I :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나머지 피고들 : 각 자백간주에
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
3항)

판사 김정우

별지